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의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현황에 관한 소고

–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중심으로 –

임 종 천

법제처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의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현황에 관한 소고
-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중심으로 -

임 종 천 (Jong-cheon Lim)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법학박사)

논문접수 : 2024. 11. 4. 심사개시 : 2024. 11. 5. 게재확정 : 2024. 11. 25.

목 차

국문초록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의 증가는 다양한 상품을 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해외사업자 등에 의해 수집·이전되어 정보주체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수 있는 단점도 있다. 특히,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의 증가는 이 같은 우려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이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규정들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국내대리인의 지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에서,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주의적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를 받는 방법 등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과 관련하여, 한국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내법의 역외적용’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하며, 해외사업자의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처리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체계의 구축도 필요하다.

※ 주제어: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보호,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역외적용, 관리감독

Ⅰ. 들어가며

1. 한국 내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상황 및 개인정보 처리의 중요성

2024년 2월 5일 중국 신문 '환치우스바오(环球时报, Global Times)[1)]'는 "한국 최대의 해외직구[2)] 목적지가 된 중국(中国成韩国最大"海外直购"目的地)"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 통계청 자료 및 관련 한국 신문 기사 등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2023년 한국인의 온라인 해외직구 총지출액은 2022년에 비해 26.9%가 증가한 6조 7천5백억 원으로 2014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2023년 한국인의 해외직구 총지출에서 중국 상품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대략 48%이며, 그 총지출액은 3조 2천8백억 원으로 2022년에 비해 121.2% 증가하였다. 줄곧 1위를 차지해 왔던 미국은 2위로 밀려나며 그 점유율은 약 27%인 1조 8천5백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22년에 비해 7.3% 하락한 수치였다. 한편, 한국의 역외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1조 6천5백6십1억 원을 기록하며, 동년 대비(同比) 10.1% 감소하였다. 그중 미국에 대한 수출은 11.1% 증가하였으나, 중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은 각각 12.6%, 15.2% 하락(下滑)하였다.[3)] 이어, 점점 더 많은 한국 소비자들이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하여 '물건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物美价廉)'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전하면서, 중국 전자상거래 업계의 성장과 도전에 대해 한국의 관련 업계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한국 내 전문가들의 의견도 같이 소개하였다.'[4)]

---

* 본 논문은 2024년 6월 28일 발간된 필자 작성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동향 보고서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현황 검토(「소비자정책동향」 제140호)"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본고의 심사를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机关报) '인민일보(人民日报, People's Daily)'에서 주관하여 발행하는 국제신문으로, 한국에서는 사실상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매체의 이미지가 강하며, 이른바 '환구시보'로 잘 알려져 있다.

2) 해외직구란 국내 소비자가 외국의 쇼핑몰 등을 통해 물품을 직접 구매(수입)하는 것으로 거래형태에 따라 직접배송, 배송대행, 구매대행으로 구분된다(자세한 것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 TRANSACTION CONSUMER PORTER) '해외직구 유형 및 과정' 〈https://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103〉(2024.6.10. 최종방문)" 참조). 최근 해외직구 중 직접배송의 형태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본고에서는 해외직구 중 '직접배송의 형태를 중심'으로 기술하며, 거래주체는 '기업과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B2C)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3) 통계청, "2023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2023년 4/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통계 포함)" 보도자료(2024.2.01.). 참고로, 해당 보도자료 22면 이하에서는 정확한 금액이 명기되어 있으나, 필자가 인용한 '환치우스바오(环球时报, Global Times)'의 관련 기사에서는 정확한 금액이 아닌 대략적인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밝힌다.

4) 环球时报, "中国成韩国最大"海外直购"目的地"(2024.02.05.), 〈https://baijiahao.baidu.com/s?id=1790009508726595514&wfr=spider&for=pc〉, (2024.05.31. 방문).

상기 중국 신문 기사는 한국 소비자들의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 현상을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 보면, 중국 상품들이 한국 소비자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는 점과 한국의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 등 중국 입장에서 긍정적인 부분만 부각시키고 있다.

반면, 최근 한국에서는 해외직구 규모 증가와 함께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 및 분쟁·상담 건수도 동시에 증가하였다.[5] 이에, 2024년 3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특허청·관세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6]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및 법 위반 시 엄중한 제재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게 하여 소비자 보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危害) 식·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하여 광고물 등 차단 요청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직구 사업자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조사 및 주요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실시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번 소비자 보호대책은 해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국내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국내법의 차별없는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대응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 정부의 공동대응 대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의 쟁점은 다양하며,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사실이다.[8] 대표

5) 대표적으로,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의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동향을 분석한 결과, 총 19,418건이 접수되어 지난해(16,608건) 대비 16.9% 증가하였다. 그 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는 ‘해외 직접거래’ 상담이 11,798건으로 전년(6,987건) 대비 68.9% 증가하였다. 특히, 해외 직접거래 상담 중 ‘물품 직접구매’ 상담이 전년 대비 136.1% 늘었는데, 이는 사기의심 사이트와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상담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알리익스프레스 상담 건수는 228건(2022년)에서 673건(2023년)으로 증가하였다(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16.9% 증가” 보도자료(2024.3.29.)).

6) 공정거래위원회,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비상경제장관회의 24-5-5(공개)) 보도자료(2024.03.13.),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 (2024.03.13. 방문)

7)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2024.3.26.),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 (2024.03.27. 방문). 특히, 이번 전자상거래 개정안 입법예고(안)에서는 ‘제20조의4(국내대리인의 지정)를 신설’하여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의견 수렴(2024.3.26.~2024.4.5.), 법제처 심사(2024.6월~2024.8월)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2024년 8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참고자료(2024.8.19.)).

적으로, 해외직구 이용자들은 일부 위해물품으로 인한 신체·건강 상의 피해, 물품의 해외 직접 구매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불만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 손해 등을 감수하면서도 다양한 상품을 저가(低價)로 직접 구매하는 거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에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물들이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하여 광범위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때에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단정할 수는 없으며, 사적 자치의 원칙은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불가피하다.[9]

특히, 개인정보의 처리[10]와 관련하여,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이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합법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수집·생성·이전·보유 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어 왔는데,[11] 이것은 오늘날 개인정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를 생각해 보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즉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용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부·기업 등에 의해 무단으로 수집·이용·공개될 수 있게 되면서 개인정보의 귀속주체인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커졌으며, 정보의 이동 — 특히, 국경 간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 을 전제로 하는 디지털경제 내지 디지털통상 등 데이터 활용에 기반한 디

8) 최근 일부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 한국 내 사업자가 생산·가공한 물품을 한국에서 직접 발송'하기 시작하는 등 플랫폼의 판매자 및 영업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있다.

9) 인간은 모두가 이성적으로 자기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 제조자와 소비자 등과 같이 사회·경제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제한 내지 수정되고 있는 것이다(양형우, 「민법의 세계(제13판)」, 정독, 2022, 16면). 더욱이, 현대소비사회에서 상품에 대한 정보는 사업자에게 편중되거나 왜곡되어 제공되며, 계약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의 형태로 체결되기 때문에 계약내용에 소비자가 관여할 여지는 거의 없다. 이와 같은 구조적 특징을 감안한다면 소비자계약에서 사적자치가 기능하기 위한 전제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거나 보충해주기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서희석, 「소비자계약의 법리」, 부산대학교 출판부, 2019, 31면).

10)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라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하고, '개인정보의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참고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 제4조는 "개인정보란 전자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기록된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된 각종의 정보를 말하며, 익명화 처리된 후의 정보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제1항). 개인정보의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사용·가공·전송·제공·공개·삭제 등을 포함한다(제2항)."고 정한다. 이에, 한국과 중국 모두 '개인과의 관련성', '특정 개인의 식별가능성'을 개인정보의 정의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면의 한계 상 본고에서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생략한다.

11) 2023년 10월, 제21대 국회의 한 국회의원은 온라인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를 이용하면 중국 법률 및 업체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따라 한국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다(월요신문(Monday News), "강민국, 알리익스프레스 이용하면 개인정보 중국에 유출위험 있어"(2023.10.20.), 〈https://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715〉, (2024.06.05. 방문)). 또한 2024년 3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플랫폼 업체들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를 경우 한국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 [보도자료]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플랫폼 업체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2024.03.22.), 〈http://cucs.or.kr/?p=15741〉, (2024.06.05. 방문)).

지털시대의 발전에 개인정보가 중요한 구성부분이 되고 있는'[12] 등 개인정보의 가치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 본고의 논의 순서와 대상

본고에서는 한국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 현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유의미한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약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선결적으로 검토한다(Ⅱ). 이는 국내법의 역외(域外) 적용 문제로서, 국내법을 역외에 있는 해외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음으로,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마련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후, 이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반영･준수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Ⅲ). 이를 통해 해당 플랫폼에서의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객관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법적 정합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특히, 법적 정합성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법률에서 정한대로 적정한 수준으로 보호･처리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끝으로, 본문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근거로 법제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Ⅳ).

본고의 연구대상은 다음의 내용으로 한정한다.

첫째, 본고에서 지칭하는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이란 플랫폼의 소재지(등록기준지)가 중국 국내외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중국 자본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엄격하게 말하면, 중국 국외에 등록된 온라인 플랫폼은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아니다. 하지만 해당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 대부분이 중국 국내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 해당 플랫폼들이 통상 중국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국 국외에 소재한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할지라도 본고에서는 편의상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으로 명명하기로 한다.

12) 박노형, 「개인정보보호법」, 박영사, 2020, 35-36면.

둘째, 본고에서 말하는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의 명칭은 AliExpress(알리익스프레스)와 Temu(테무)이며,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AliExpress와 Temu에서 시행 중인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말한다.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이와 같이 한정한 이유는 이들 플랫폼들은 현재 중국산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무료배송, 무료반품, 각종 할인쿠폰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내 소비시장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마련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여타 플랫폼들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본고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관련 문제를 고찰한다.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물품 등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이들 플랫폼에서 직접 수집·이용·저장·이전되는 등 개인정보가 국내외에서 처리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후술하겠지만,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은 중국 역외 국가에 회사 설립등기가 되어 있지만,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주문·결제·배송 등을 위해 중국 역내 및 역외의 해외사업자들에게로 이전되는 모습을 보인다. 다시 말해,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저장·이전 등이 국내외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국 역외·역내 지역 사이의 관련 법률문제,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모회사·자회사 간 지배구조에 따른 내부적 관계,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국 관련 법률의 직접 적용문제 등 본고에서 이를 모두 논하기에는 지면상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Ⅱ.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여부 검토

한국 이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은 중국 역내(域內)에 소재하고 있거나, 적어도 중국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만약 이와 같다면, 이들 플랫폼은 한국 영토 밖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대하여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직접 적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국외 및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적정한 법적 보호 장치 없이 처리되어 해당 정보주체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위험성은 언제든지 열려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역외에 소재한 개인정보처리자[13]인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한국 역내로 재화 등을 제공하면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이들에게 국내법,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국 역외에 소재한 해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실질적인 침해행위가 있다면 이들에 대하여도 국내사업자와 동등한 수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해외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 공법관계[14]를 설정하여 해외사업자를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실효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1. 「개인정보 보호법」상 역외적용 규정의 검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한국 영토 밖에 소재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행위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 소위 '(국내)법의 역외적용[15]'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한국의 일부 법률에서 국외행위 등에 대하여도 해당 법률이 적용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역시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고 정한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역시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고 정한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의 역외적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해외에서 한국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등 해외에 위치한 사업자가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이들도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동법을 준

1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라고 정한다.

14) 대표적인 공법 관계는 행위자에 대하여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관계일 것이다.

15) 법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laws)이란 "한 국가의 법은 그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전제하에 경우에 따라 이 영토 외에서 적용되는 것을 예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석광현·정순섭, "국제자본시장법의 서론적 고찰 – 역외적용 및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를 중심으로 – ", 「증권법연구」, 제11권 제2호(2010), 32면), 자국의 공법이 타국 및 타국 소속의 개인 및 기업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공법의 효력범위에 관한 수정을 의미한다(최승필,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대한 법적검토– 역외적용 이론의 발전 및 적용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33권 제1호(2009), 207면).

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16]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의 명시적인 역외적용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는 해석론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주요 견해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역외적용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의 인적·지리적 적용범위 등에 대한 해석론에 의할 때 외국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가 효과주의[17] 이론에 따라 국내에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즉 '첫째, 「개인정보 보호법」 정의 규정에 대한 문리적 해석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성립 요건에는 국적이 포함되지 않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적 범위를 국내로 한정할 이유는 없다. 둘째, 현재와 같은 고도화된 정보화 사회에서는 시공(時空)을 초월하여 개인정보의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전통적인 물리적 경계인 국경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범자(受範者)를 달리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또한 국내에서 동일하게 행하여지는 영업이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업자에게만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다면 오히려 외국 사업자가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국적' 불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18] 결국, 외국 개인정보처리자가 역외에서 행하는 개인정보 처리행위의 경우에는 효과주의 이론에 따라 그 영향이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19]'는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다음으로, 한국의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의 관할'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규정 등의 해석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20] 즉 '「국제사법」 제42조(소비자계약의 관할) 제1항은 소비자가 자신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법정된 일정한 사유[21] 중 한 가지라도 발생하는 때에는 한국에 일상 거소가 있는 소비자는 계약의 상

16) 최경진 외, 「개인정보보호법」, 박영사, 2024, 107면.
17) 효과주의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가 우리나라의 영역 외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효과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면 동법이 적용된다는 원칙"을 말한다(석광현·정순섭, 앞의 논문, 35면). 즉 효과주의는 외국인이 역외에서 한 행위라 할지라도 내국의 질서에 '직접적·실질적 효과(immediate and substantial effect)'를 미치는 때에는 자국법을 역외 적용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이해원,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연구", 「정보법학」, 제26권 제1호(2022), 301면).
18) 이해원, 앞의 논문, 292면.
19) 이해원, 앞의 논문, 310면.
20) 최경진 외, 앞의 책, 108면.
21) 법정된 일정한 사유란 '사업자가 계약체결에 앞서 소비자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이하 "일상거소지국")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 외의 지역에서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을 향하여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그 계약이 사업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국제사법」 제42조제1항제1호)·사업자가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국제사법」 제42조제1항제2호)·사업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이 아닌 국가에 가서 주문을 하도록 유도한 경우(「국제사법」 제42조제1항제3호)'를 말한다.

대방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한국 법원의 관할이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에 따라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22]는 일정한 범위의 업무[23]를 대리하기 위한 국내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일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는 것이다.

끝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역외적용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즉 '한국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2020년에 데이터 3법을 개정하는 등의 성과를 냈지만, 데이터의 역외적용에 있어서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해석론으로만 접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입법을 통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24]는 의견도 주목할 만하다.

2. 「개인정보 보호법」의 역외적용을 위한 실무적 해석론 검토

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역외적용을 위한 일반원칙

「개인정보 보호법」의 역외적용과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첫째, 해외사업자가 전(全) 세계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둘째, 해외에서 한국인 또는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셋째, 한국 영토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실무적 해석론을 내놓았다.[25]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그 규율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를 한국인 또는 한국 내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보호대상인 개인정보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정하고 있어 한국인 또는 한국 정보주체로 한정하고

22)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3(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에 따라,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국내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 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자'를 말한다.

23) 일정한 범위의 업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 제1항 각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와 관련한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말한다.

24) 이상우, "중국 데이터법의 역외 적용", 「숭실대학교 법학논총」, 제54집(2022), 182-183면.

25) 2024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해외사업자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원문에는 "해외사업자가 전 세계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외에서 한국인 또는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또는 한국 영토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외사업자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2024, 5면)."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해석상, 세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① 한국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이 한국 내에서 한국인 또는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② 해외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이 한국 영토 내 또는 한국 영토 밖에서 한국인 또는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③ 한국 또는 해외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이 한국 내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26]

비록 이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마련한 해외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적용 안내서」의 법적 지위는 법령이 아닌 가이드라인에 불과하지만,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정한 실무 지침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역외적용 규정이 부재한 현실에서 관련 입법적 공백을 메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한편, 생각건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당 안내서에서 보호의 대상을 '한국인 또는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로 규정한 이유는 주체 범위의 확대를 통해 개인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즉 '한국인'이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영토 내·외의 물리적 경계와 관계없이 보호된다. 그리고 '한국 정보주체'란 한국 영토 내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외국 정보주체 모두를 포함하여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나. 효과주의 이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역외적용 가능성 검토

한국 정부는 해외사업자가 한국 영토 밖에서 실행한 위법행위가 국내 질서에 '직접적·실질적 효과'를 미치는 때에는 적극적으로 조사 및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27]

특히, 2002년 4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에 참여한 미국, 영국, 독일의 6개의 생산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2억 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28] 또한 2022년 8월 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한 해외사업자에 대해 시정

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의 안내서, 5-6면.
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의 안내서, 7면.
28) 흑연전극봉 부당한 공동행위건(공정위 제2002-077호, 2002.4.4.)

명령과 함께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29]

한국 법원 역시 관련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법률의 적용 대상을 한국 사업자로 한정하는 등의 예외 규정이 없는 한, 법률에서 정한 목적·위반행위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외사업자에 대하여 한국 법의 적용을 긍정하고 있다.[30]

예를 들면, 상기한 흑연전극봉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체인 사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내국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으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를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쳤다면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한도 내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31]라고 판단하였다.

한국 정부와 법원은 한국의 관련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국외에서의 행위가 한국에 직접적·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해당 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소위 '효과주의' 이론을 통해 한국의 관련 주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법원의 이 같은 해석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역외적용 규정이 부재한 현재 상황에서 한국 정보주체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유추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2022-014-104, 2022.8.31.
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의 안내서, 8면.
31) 대법원 2006.3.23., 선고 2003두11124 판결.

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역외적용을 위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검토

(1)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

(가) 구체적 판단기준[32)]

해외사업자가 한국 정보주체를 상대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해당 해외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터넷의 특성상 해외사업자는 사업장이 한국에 없어도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이 한국 정보주체임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해외사업자가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는 현실적으로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언어·통화·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형태 및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적용

후술하겠지만, AliExpress와 Temu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모두 한국 이용자를 거래 당사자로 상정하여 '한글'로 작성되어 있고, 재화 등 서비스 제공 형태 및 방식도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AliExpress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는 "한국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은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일 것이다.

(2) 한국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여부

(가) 구체적 판단기준[33)]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해외사업자가 한국인 또는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한국 정보주체에게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

3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의 안내서, 9-12면.
3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의 안내서, 13-14면.

을 미치고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가 한국인 또는 한국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은 사안별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적용

후술할 "〈그림 1〉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구조 및 개인정보 처리 순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AliExpress와 Temu는 한국(국내)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전하고 있어 한국 정보주체에게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개인정보처리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3) 한국 영토 내에 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가) 구체적 판단기준[34]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전 세계에 공통으로 제공하면서 한국 내에 사업자를 설립하여, 이들 사업자를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명시하고 있다면, 해당 한국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해외사업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전 세계에 공통으로 제공하면서 한국 사업자(한국 법인)를 설립하여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명시한 경우에는 한국 사업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한국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한국 사업자(한국 법인)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다.

참고로, 한국 영토 내 사업장은 법인뿐만 아니라 개별 오피스나, 연락사무소, 그리고 수탁자의 사업장 등이 모두 포함된다.

(나)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적용

AliExpress와 Temu 모두 각각의 한국법인을 설립하였다. 후술하겠지만, AliExpress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인 Alibaba.com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가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싱가포르에서 처리함과 동시

3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의 안내서, 14-16면.

에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한국 법인)로 이전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AliExpress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Temu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수집하는 모든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인 Whaleco Technology Limited('Temu')가 처리하며, 미국에 소재하는 서버에서 저장되어 직접 처리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참고로, Temu는 Elementary Innovation Pte. Ltd로 싱가포르에 회사 설립등기가 되어 있지만, 개인정보처리자는 아일랜드에 소재한 Whaleco Technology Limited가 맡고 있으며, 관련 서버는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등 다소 복잡한 구조를 보인다. 하지만 Temu 역시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 정보주체에게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이 여전히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은 상기에서 확인한 바와 같다.

3. 소결

가상공간인 인터넷에서의 국내법의 역외적용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다시 말해, 인터넷은 시공을 초월하는 특성으로 인해 종래의 영토적 제한을 전제로 한 규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으며, 인터넷에서 국내사업자의 국내에서의 서비스와 외국사업자의 외국에서의 서비스가 이용자 입장에서 큰 차이가 없어 서비스제공자의 국적이나 지리적 위치는 고려되지 않는다. 이에 규제당국의 입장에서는 국내사업자와 국외사업자를 동일하게 규제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데, 외국사업자에 대한 국내법의 역외적용이 인터넷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35]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상 역외적용 규정의 유무(有無)는 개인정보 및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편, '효과주의'는 미국에서 독점금지법을 역외적용하는 과정에서 정립된 이론으로 외국에서 외국인의 행위가 자국에 중요한 효과를 미치는 경우에 자국의 법이 적용된다는 이론이다.[36] 한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아직 역외적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2002년과 2003년에 외국사업

35) 하지만 아무리 입법관할권의 범위에 속하거나 역외적용으로 입법관할권을 확대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집행할 수 없다면 입법관할권이나 역외적용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집행관할권의 역외적용은 법 이론적 문제라기보다는 국가 간 힘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윤종수, "인터넷에서의 국가관할과 국내법의 역외적용", 「공법연구」, 제39집 제1호(2010), 44-53면).
36) 최경진 외, 앞의 책, 105면.

자들이 외국에서 행한 가격담합행위에 대하여 처음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시정명령과 아울러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으며,[37] 이는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두11124 판결 및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등’을 통해 효과주의 이론에 따라 국내법의 역외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 12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조항(당시 제2조의2)을 처음으로 신설하면서 국내법의 역외적용이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도 명문화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명문의 역외적용 규정이 부재한 현재, 한국 정부 및 법원을 통해 확립된 ‘효과주의에 근거한 국내법의 역외적용 규정’의 유추적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마련한 「해외사업자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에 근거한 실무적 해석론의 적용 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역외적용 규정의 입법 불비가 정보주체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록 「개인정보 보호법」상에 역외적용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해외사업자의 행위가 한국 정보주체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규정들을 해외사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더 나아가,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역외적용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Ⅲ.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현황 검토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집·이용·저장·이전되는 등의 방법으로 국외에서 직접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모습일 것이다.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은 해당 사업자들이 마련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보호 및 처리되고 있음을 공개하면서 자신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등 한국 법률에서 규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37) 권오승·홍명수, 「경제법(제14판)」, 법문사, 2021, 151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하여야 한다.[38]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보호방침을 자율적으로 결정 및 공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행위를 개선하도록 하면서도 정보주체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방침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39]

한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적 성격은 다음의 견해들로 요약할 수 있다.[40] 즉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도 구할 필요도 없는 자체적으로 정한 내부적 기준이나 방침으로서, 정보주체 등과 체결하는 계약도 아니고 약관도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41] 이에 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검토하여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한 사례가 적지 않은 점,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불공정약관 조항에 해당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여 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점, 다수의 개인정보처리자(특히,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약관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따름'을 명시하고 있는 점, 계약에 요구되는 엄격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정보주체 및 소비자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약관적 성격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박도 수긍할 필요가 있다'[42]는 주장이 그것이다. 생각건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약관성을 인정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본 장에서는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이 마련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이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반영·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38)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및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39) 박노형, 앞의 책, 404면.
4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지면의 한계 상 여기에서 소개하는 내용으로 갈음한다.
41) 박노형, 앞의 책, 407면.
42) 최경진 외, 앞의 책, 516-517면.

1.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의 기(旣)공개된 주요사항의 검토

가. 플랫폼 등록 기준지 및 개인정보처리자 현황

AliExpress와 Temu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에 따르면, 해당 플랫폼들의 설립등기는 중국이 아닌 ‘싱가포르’에 각각의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 역시 중국이 아닌 ‘싱가포르’와 ‘아일랜드’ 법인으로 각각 명기되어 있다. 해당 내용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플랫폼 등록 기준지 및 개인정보처리자 현황

구 분	AliExpress	Temu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명칭】 AliExpress.com 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2024.11.4. 시행) 【개인정보처리자】 Alibaba.com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 (싱가포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명칭】 Temu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4.6.17.) 【개인정보처리자】 Whaleco Technology Limited (아일랜드)
이용약관	【이용약관의 명칭】 AliExpress.com 이용 약관 (대한민국(“한국”)에만 적용됨) (2024.7.11. 게시) 【회사 설립등기】 Alibaba.com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 (싱가포르)	【이용약관의 명칭】 Temu 이용 약관 (2024.5.8. 효력발생) 【회사 설립등기】 Elementary Innovation Pte. Ltd (싱가포르)

출처: 필자 직접 정리

나.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

AliExpress와 Temu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에서는 다음의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처리현황과 관련하여, AliExpress의 개인정보처리자는 Alibaba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이며, 해당 사업자가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고 있다. Temu의 개인정보처리자는 Whaleco Technology Limited 이며, 해당 사업자가 한국에서 수집하는 모든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국내대리인의 지정과 관련하여, AliExpress와 Temu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참고로, AliExpress와 Temu는 모두 한국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내용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

구 분	AliExpress	Temu
개인정보 처리 현황	【개인정보 처리방침】 Alibaba.com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가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싱가포르에서 처리 【이용약관】 • 한국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 하에 개인정보처리자인 Alibaba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가 수집 및 처리 • 한국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AliExpress.com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수탁자인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한국 설립)로 이전되어 처리	【개인정보 처리방침】 한국에서 수집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Whaleco Technology Limited (‘Temu’) 서버(미국 소재)에 저장, 직접 처리 *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투자기업기본정보’ 에 등록된 내용에 따르면, Temu는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으로 웨일코 코리아유한책임회사(Whaleco Korea LLC) 한국법인을 설립(2024.2.28.) 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에는 미반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국내대리인	【개인정보 처리방침】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국내대리인: 지정	【개인정보 처리방침】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국내대리인: 지정

출처: 필자 직접 정리

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변경 연혁

AliExpress와 Temu는 한국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규제당국과 한국 여론의 관심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도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변경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면 되기 때문이다.[43] 긍정적인 부분은, 그동안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연혁을 살펴보면,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의 방향성은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행위를 보다 명확화·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표적으로, AliExpress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연혁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처리자의 명시에 대하여, 방침의 수립 당시(2020.01.13.)에는 계약 당사자의 국적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로 정해졌지만, 2차 변경(2024.04.05.~)부터는 방침의 명칭도 'AliExpress.com 개인정보처리방침(한국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개인정보처리자도 'Alibaba.com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로 명시되고 있다.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와 관련하여, 방침의 수립 당시(2020.01.13.)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1차 변경(2022.11.30~)에서 '파기 절차는 서비스 해지 및 회원계정 삭제 요청 시, 30일 이내 조치한다.[44] 파기방법은 전자적 형태의 개인정보는 익명화 방식 등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한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의 경우에는, 1차 변경(2022.11.30.~)시 까지도 해당 규정이 없었으나, 2차 변경(2024.04.05.~)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이용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에 관련되거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 싱가포르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보관하며, 백업 저장소(미국, 독일)를 둔다.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거부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본 플랫폼 이용 및 당사

43)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며(「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2항),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거나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44) 현행 AliExpress 개인정보 처리방침(2024.11.04.~)에서는 '회원계정 취소 또는 삭제 요청 시, 10일 이내에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정한다.

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되었다.45)

AliExpress와 Temu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연혁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변경 연혁

AliExpress 개인정보 처리방침	주요 사건	Temu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0.01.13~2022.11.29. (수립)		
2022.11.30.~2024.04.04. (1차 변경)	2024.03.13. 한국 정부 관계부처 합동「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마련 (공정위·식약처·특허청·관세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2023.12.19.~2024.03.21 (수립)
2024.04.05.~2024.06.30. (2차 변경)	2024.04.18. 개인정보 보호 위해 중국과 협력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03.22.~2024.06.16. (1차 변경) 2024.06.17.~ (2차 변경, 현행)
2024.07.01.~2024.07.16. (3차 변경)		
2024.07.17.~2024.07.20. (4차 변경)		
2024.07.21.~2024.07.29. (5차 변경)	2024.07.24. AliExpress(알리익스프레스)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19억 7,800만원 과징금 부과, 국내기업 수준의 개인정보 관리가 이뤄지도록 시정명령·개선권고 병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Temu(테무)의 경우 사실관계 추가 확인 및 자료제출 보완요구 등을 거쳐 심의·의결 중	

45) 생각건대, 2023년 3월 14일「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AliExpress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도 이 점을 고려하여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AliExpress 개인정보 처리방침	주요 사건	Temu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4.07.30.~2024.09.08. (6차 변경)		
2024.09.09.~2024.10.21. (7차 변경)		
2024.10.22.~2024.11.03 (8차 변경)		
2024.11.04.~ (9차 변경, 현행)		

출처: 필자 직접 정리

라.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구조 및 개인정보 처리 순서도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은 일종의 열린장터(오픈마켓)로서, 입점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물품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인 것으로 보인다.[46] 이 과정에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물품의 구매 및 발송 등을 위해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직접 수집·저장·이용 등 처리되며, 중국 국내·외에 소재한 판매자 등 제3자에게 제공 및 이전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해당 내용들을 도식화 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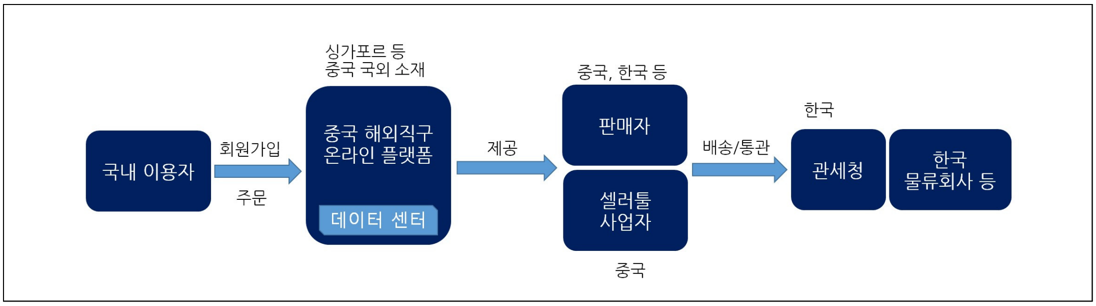


그림 1.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구조 및 개인정보 처리 순서도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관련 보도자료('24.07.25.)를 참고하여 필자가 작성

4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알리익스프레스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19억 7,800만원 과징금 부과" 보도자료(2024.7.25.),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0386〉, (2024.08.10. 방문)

2.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분석 및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법적 정합성을 위한 개선 건의

가.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주요 내용 분석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반영하여야 한다. 즉 "①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③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④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⑤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 ⑥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⑦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⑧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개인정보 보호업무 등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⑩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 ⑪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47]"의 내용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AliExpress와 Temu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분석·비교의 편의성을 위해 표의 형식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 4〉[48]와 같다.

표 4. AliExpress와 Temu 개인정보처리방침 주요 내용의 비교

구 분	AliExpress 개인정보 처리방침 (현행, 2024.11.04.시행)	Temu 개인정보 처리방침 (현행, 2024.06.17.시행)
플랫폼 유형	기업과 소비자간(B2C) 거래 플랫폼	홈페이지 하단에 별도 공지 (Temu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님)
전체 구성 (목차)	A.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B.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한국 내 제3자 제공	-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 - 이용자 정보의 사용 방법과 목적 - 이용자 정보의 공유 방법과 목적

47)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첫째,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둘째,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의 근거 및 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내용들. 셋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넷째, 국외에서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국가명'을 말한다.

48) 〈표 4〉의 주요 내용들은 필자가 선별한 것이고, 문장의 서술방식은 원문의 내용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명료하게 표현하였으며, 【제명】 등은 필자가 추가한 것임을 밝힌다. 참고로, AliExpress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이 Temu 개인정보 처리방침보다 구체적이다.

구 분	AliExpress 개인정보 처리방침 (현행, 2024.11.04.시행)	Temu 개인정보 처리방침 (현행, 2024.06.17.시행)
	- 개인정보 국외 제3자 제공 C. 개인정보 처리위탁 - 개인정보 국내처리위탁 - 개인정보 국외처리위탁 - 기타 D. 개인정보 국외 직접 수집 및 이전 E.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및 파기 F.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G.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H. 미성년자 I. 개인정보 보호조치 J.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개정 K.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국내대리인 L. 언어 M. 당사에 연락하는 방법	- 개인정보 처리 위탁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추가적인 이용·제공 - 이용자의 통제 및 선택 - 이용자 권리 - 아동 - 데이터 보안 및 보유 - 개인정보처리 방침 변경사항 - 개인정보보호부서 및 국내대리인 - 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원칙】 본 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한국의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수집 목적】 이용자 신원 확인 및 서비스 이용 목적 파악 ☐ 회원가입 시 플랫폼의 핵심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결제·제품 배송·환불을 위해 필요한 정보 추가 수집 가능(「보호법」 제15조) ☐ 이용자가 동의한 수집·이용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수집 목적】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개선하는 과정에서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설명된 목적을 위해 수집. 한국에서 수집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미국에 소재한 Temu 서버에 저장 【사용자가 제공하는 정보】 계정 생성, 주문·결제, Temu에 연락, 기타 방식으로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는 다음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에 제공 ☐ 계정 및 프로필 관련 정보: Temu 계정 생성 및 관리를 위해 이용자의 휴대폰 번호·이메일 주소 수집 가능

구 분	AliExpress 개인정보 처리방침 (현행, 2024.11.04.시행)	Temu 개인정보 처리방침 (현행, 2024.06.17.시행)
	【주요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 □ (목적) 계정 생성, 관리, 멤버십 혜택 (개인정보 항목) 〈필수〉 별명·로그인을 위한 비밀번호·휴대전화 번호·이메일 주소·국적·19세 이상인지 여부 〈선택〉 성별, 생년월일 (보유 및 이용기간) 회원 탈퇴 시 □ (목적) 주문·결제·배송서비스 제공, 구매자 및 판매자에 대한 리스크 통제 및 관리 (개인정보 항목) 구매자 정보(계정 ID·이름·전화번호·주소·이메일 주소), 주문 ID, 제품 구매취소·반품·교환·환불 정보, 수령인 정보(이름·주소·우편번호·전화번호·이메일·연락처 정보·개인통관 고유부호·결제번호·인보이스 정보·구매에 사용된 은행 계좌정보 또는 유사한 결제정보·결제 시 사용된 휴대폰 번호·해외 카드 결제 시 사용된 외국은행 카드번호 등), 수입통관 관련 정보, 새벽배송을 위한 정보(배송위치·상세 접근정보(공동현관문 접근 번호)·새벽 배송 도착 알림·제품 배송 완료 사진) 등 (보유 및 이용기간) 회원 탈퇴 시 【자동수집 정보】 □ IP주소·기기 유형·기기의 고유 식별번호·브라우저 유형·광범위한 수준에서의 위치(예: 국가 또는 도시)·검색패턴 및 본 플랫폼에서 이용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부 정보 등	□ 구매 관련 정보: 거래를 완료하고 주문을 이행하기 위해 이용자의 주문 관련 데이터(예: 거래 내역)·결제정보(예: 결제 카드 번호 또는 지불에 필요한 다른 제3자 결제 정보)·배송 주소(예: 시, 도, 거주 국가, 우편 번호) 및 수신자 연락처 정보(예: 이름, 휴대폰 번호) 수집. 한국인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수집 □ 고객 지원활동 관련 정보: 이용자와의 소통 내역 수집 □ 사용자 생성 콘텐츠 정보: 프로필 사진, 사진,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댓글, 메시지 등 수집 □ 기타 데이터 정보 등: 이용자가 제공한 다른 데이터 수집 【제3자 출처로부터 얻은 정보】 이용자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제3자 출처로부터 얻은 개인정보와 결합 가능 □ 데이터 제공업체 관련 정보 □ Temu의 계열사 파트너 제공 정보 □ 마케팅 파트너 제공 정보 □ 공개 자료 등 【자동수집 정보】 이용자의 컴퓨터 또는 모바일 장치 등에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자동으로 기록 가능 □ 장치 데이터: 사용자가 사용하는 기기에 대한 특정 정보(예: 기기 모델, 운영 체제 정보 등) 수집 □ 서비스 사용 정보: 사용자가 조회한 페이지 등 서비스 상호 작용에 대한 정보 수집

구 분	AliExpress 개인정보 처리방침 (현행, 2024.11.04.시행)	Temu 개인정보 처리방침 (현행, 2024.06.17.시행)
		□ 위치 데이터: 사용자의 대략적인 위치 데이터(예: IP 주소) 수집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원칙】 이용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나, 다음의 경우 예외가 인정 ① 관련 법령의 규정 또는 명시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로서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한국 내 제3자 제공】 □ 제공받는 제3자 1. (주체) 판매자(판매자 리스트 有) (제공되는 개인정보) ①주문·결제·배송서비스 제공 정보: 구매자 정보(계정 ID·이름·전화번호·주소·이메일 주소), 주문 ID, 제품 구매·취소·반품·교환·환불 정보, 결제번호, 구매에 사용된 은행 계좌 정보 또는 유사한 결제 정보·결제 시 사용된 휴대폰 번호·해외카드 결제 시 사용된 외국 은행 카드 번호 등. ②수입통관 관련 정보: 수령인 정보(이름,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연락처 정보, 개인통관고유번호(필요시)). ③새벽배송을 위한 정보: 배송위치, 상세 접근 정보(공동 현관문 접근 번호), 제품 배송 완료 사진 (보유 및 이용기간) 구매 완료 시부터 90일까지 (제공 목적)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제품 구독 상담 및 적용, 제품 및 상품의 배송,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원칙】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전제로, 통관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관세청에 제공 가능 (개인정보 제공 받는 자) 관세청 (제공 받는 자 이용 목적)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통관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통관고유번호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통관 후 파기 □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통관절차에 차질 발생 가능

구 분	AliExpress 개인정보 처리방침 (현행, 2024.11.04.시행)	Temu 개인정보 처리방침 (현행, 2024.06.17.시행)
	고객 상담 및 불만처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계약 및 전자상거래(통신판매) 계약 등 이행 목적 업무 처리 2. (주체) 관세청 (제공되는 개인정보) 구매자 성명, 수령인 성명, 수령인 전화번호, 수령인 주소의 우편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 판매자 ID, 판매자 성명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제공 목적) 통관 처리 3. (주체) 국세청, 세무서 (제공되는 개인정보) 판매자의 사업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전자상거래 관련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사업허가증(해당되는 경우), 세금 또는 유사한 정보 포함)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제공 목적) 기관 자료 제공 【국외 제3자 제공】 □ (원칙) 사전 동의에 의하거나,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에 따라 플랫폼 이용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처리위탁 및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 가능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거부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플랫폼 이용 및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 제한 가능 □ 이전받는 자 (주체) 판매자(판매자 리스트 有 (188,432개 업체) (이전받는 자의 위치) 중국	

구 분	AliExpress 개인정보 처리방침 (현행, 2024.11.04.시행)	Temu 개인정보 처리방침 (현행, 2024.06.17.시행)
	(이전되는 개인정보) ①주문·결제·배송 서비스 제공 정보: 구매자 정보(계정 ID·이름·전화번호·주소·이메일 주소), 주문 ID, 제품 구매·취소·반품·교환·환불 정보, 결재번호, 구매에 사용된 은행 계좌 정보 또는 유사한 결제 정보·결제 시 사용된 휴대폰 번호·해외 카드 결제 시 사용된 외국 은행 카드 번호 등. ②수입통관 관련 정보: 수령인 정보(이름,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연락처 정보, 개인통관고유번호(필요시)). ③새벽배송을 위한 정보: 배송위치, 상세 접근 정보(공동 현관문 접근 번호), 제품 배송 완료 사진 (보유 및 이용기간) 구매 완료 시부터 90일까지 (이전 일시 및 방법) 필요시, API 및 판매자 시스템을 통한 확인 가능 (이전받는 자 이용 목적)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제품 및 상품의 배송, 계약 등 이행 목적 업무 처리	
개인정보 국외 직접 수집 및 이전	【국외 제3자 제공】 □ (원칙)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이용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에 관련되거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 싱가포르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보관. 대한민국 백업 저장소*를 둠 * (필자주: ‘싱가포르에 대한민국 전용 백업 저장소를 둔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에 백업 저장소를 둔다는 의미인지’ 불명확) □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 국내외 제3자 기업에게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여 Temu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이용자에게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 국외에 소재한 제3자 기업에게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 기업 목록 有)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Temu의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용자가 국외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구 분	AliExpress 개인정보 처리방침 (현행, 2024.11.04.시행)	Temu 개인정보 처리방침 (현행, 2024.06.17.시행)
	거부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플랫폼 이용 및 제공받는 서비스의 범위 제한	서비스 이용 불가. 국외 이전을 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탈퇴 진행·고객센터에 문의 * (필자주: Temu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현재까지 별도의 '개인정보 국외 직접 수집 및 이전' 항목 부재)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및 파기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원칙】 □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 이용자의 파기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 □ 단,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존 가능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과 관련된 기록) 5년간 보존(「전자상거래법」 제6조) (대금 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 관련 기록) 5년간 보존(「전자상거래법」 제6조등) (소비자 불만,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간 보존(「전자상거래법」 제6조 등) (로그인 정보) 3개월 또는 12개월 보존(「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등) 【파기 절차 및 방법】 □ (파기 절차) 회원계정 취소 또는 삭제 요청 시, 10일 이내 신속하게 조치 □ (파기 방법) 전자적 형태의 개인정보는 디가우징(자기장을 이용한 데이터 삭제 방법)·저장매체 구부리기·분쇄 등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파기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익명화 처리 등의 방법으로 파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하드카피'를 말함)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데이터 보안 및 보유 원칙】 □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 이를 파기.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 및 회원 계정의 삭제를 요청하면 90일 이내에 파기 조치 □ 단,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법정 보유기간에는 개인정보를 보유 (「전자상거래법」)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5년),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3년),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6개월) (「통신비밀보호법」)–웹사이트·앱 방문 기록(3개월) 등 【파기 절차 및 방법】 □ (파기 절차)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해당 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여 내부 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한 후 파기 □ (파기 방법) 전자적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 하드카피 형태로 보관된 개인정보는 파쇄기를 통하여 파기

구 분	AliExpress 개인정보 처리방침 (현행, 2024.11.04.시행)	Temu 개인정보 처리방침 (현행, 2024.06.17.시행)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국내 대리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국내대리인 정보공개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국내대리인의 정보 공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여기에서는 실명 생략), 이메일: DataProtection.AE@aliexpress.com / koreaprivacyrep@aliexpress.com 【국내대리인】 □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 주소: 서울 ○○, 대표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여기에서는 주소, 대표자, 전화, 이메일 생략)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국내대리인 정보공개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부서 및 국내대리인 정보 공개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처리 담당 부서】 □ 정보보호사무국(Data Protection Office), 이메일: privacy@temu.com 【국내대리인】 □ 제너럴에이전트 주식회사(대표이사: ○○○), 주소: 서울 ○○, 전화번호: ○○, 이메일: ○○(여기에서는 주소, 전화, 이메일 생략) * (필자주: Temu가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으로 웨일코코리아유한책임 회사(Whaleco Korea LLC) 한국법인을 설립(2024.2.28.)한 것은 상기한 바와 같음)
구속력을 갖는 언어	【구속력을 갖는 언어(원칙)】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국문본과 다른 버전 간에 불일치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국문본이 우선하여 구속력을 가짐	【구속력을 갖는 언어(원칙)】 관련 내용 부재

출처: 필자 직접 정리

나.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법적 정합성을 위한 개선 건의

(1) AliExpress와 Temu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정합성 여부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은 한국의 관련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특징이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 방침들

의 주요 내용들은 큰 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규정들을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시하고 있는 내용들과 해당 사업자들이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실제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실질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와는 별개로, 외형상으로만 보면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이외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 2에서 요구하는 '국내대리인의 지정'을 마련한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포함하여 한국 국내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방침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 및 '정보주체의 권리' 등 한국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적·절차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결국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한국 규제당국의 몫이다.

한편,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서로 비교해 보면, AliExpress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Temu의 개인정보 처리방침보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준수사항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AliExpress와 Temu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개선 건의

(가) 한국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주의적 규정의 필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3항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는 정보주체(이용자)의 권

익 보호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명시된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즉,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가능한 해석내용 중에서 고객에게 유리한 것을 택하여야 하는 의미로서,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49]

하지만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계약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

비록 해석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해석 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적용하는 것을 명시하는 규정을 주의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바람직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참고로,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검토하여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한 사례가 적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불공정약관 조항에 해당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 이용자 보호에 나서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등 정부 차원에서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나) 개인정보 처리의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동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제공(동법 제17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동법 제18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동법 제19조),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동법 제22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제28조의8) 등'의 동의 시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

49) 양창수·김재형, 「계약법(제3판)」, 박영사, 2020, 131면.

도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는 '개인정보의 (국내외)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국내외) 처리 위탁,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 등에 '(사전)동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각각의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각 절차, 항목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는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전적·포괄적 동의가 아닌 각 단계에서 별도의 동의가 명시되고, 이것이 절차적으로 보장되어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다)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의 최소수집 원칙 준수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마련하고 있는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항목 등의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최소수집의 원칙'[50]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수집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국내외 제3자에게 이용·이전·위탁 등의 과정을 거쳐 처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의 수집 절차에서부터 최소수집 원칙에 대한 준수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AliExpress의 개인정보 처리방침[51]에서는, 주문·결제·배송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한국 이용자의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배송과 관련하여, 공동현관문 접근 번호'를 수집하고 있다.[52] 배송의 편의를 위한 목적임을 감안하더라도 한국 이용자가 거주하는 장소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 등을 수집하는 것은 과도한 수집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용자를 위한 배송의 편의 목적과는 별개로 다른 거주자들의 의사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은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최소수집의 원칙 준수를 위해 해당 플랫폼에서 처리(수집·이용·이전 등)되는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항목을 '필수'와 '선택' 항목으로 구분하여, 한국 이용자의 명시적인 선택에 따라 관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0)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51) Temu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는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기가 어렵다.
52) 상기한 '〈표 4〉 AliExpress와 Temu 개인정보처리방침 주요 내용의 비교' 참조.

(라) 한국 이용자가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의 다양화 필요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보주체인 한국 이용자의 '동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각 단계에서 동의 받는 방법이 절차적으로 보장되도록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하지만 실제에서 한국 이용자가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물품등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만약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서비스의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필자가 상기에서 제안한 것처럼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으로 하여금 동의를 받는 방법을 각 단계에서 절차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도, 한국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현실의 온라인 거래에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점점 더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53]

대표적으로, AliExpress의 개인정보 처리방침[54]에서는,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항목에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접근을 요청할 권리, 개인정보 처리의 중지를 요청할 권리, 개인정보의 삭제 및 파기를 요청할 권리" 등이 있음을 규정하고, "이용자가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정정하고 싶은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여 10일 이내에 관련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AliExpress 개인정보센터를 통해서도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고 정한다.[55]

하지만 정보통신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을 하기 위하여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 요청하고 관련 회신을 받기까지 1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56] 10일의 기간 역시 장기(長期)간에 속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53) 2024년 10월에 필자가 참석했던 한국법제연구원 주최의 해외 플랫폼 거래 관련 제2차 워크숍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이 논의되었다. 한편, 해당 연구과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어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54) Temu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는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따른 결정 거부 또는 그에 대한 설명 요구 등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또한 이용자는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원칙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55) 상기한 '〈표 4〉 AliExpress와 Temu 개인정보처리방침 주요 내용의 비교'에서는 지면의 한계로 인하여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다.

56) AliExpress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원문에는 "당사는 10일 이내에 응답할 것입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표현은 10일이 경과한 후에도 연락할 수 있음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은 한국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즉시 접근하여 정보주체의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을 신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 이용자(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느 단계에서 누구에 의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개인정보처리자)이 “개인정보 처리 이력 추적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3. 소결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약관 등에 따르면, 이들의 회사 설립등기와 개인정보처리자는 중국 역외(外)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법리상·외형상’으로만 보면 이들 플랫폼들은 중국 법률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57)]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은 한국 정부와 관련 여론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시로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연혁을 보면, 한국 규제당국의 행정력과 여론이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이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의 처리를 명확화·구체화시키도록 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 방침들의 주요 내용들은 큰 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규정들을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뿐만 아니라 ‘국내대리인의 지정’을 마련한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포함하여 한국 국내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에서 법적 정합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한국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주의적 규정의 마련, 개인정보 처리의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한 개선, 개인정보의 최소수집 원칙 준수를 위한 대책 마련,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위한 방법의 다양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57)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거래와 상관없는 중국 국내의 제3자에게로 이전·유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지면의 한계 상 관련 논의는 생략한다.

Ⅳ. 결론 및 제언

1. 결론

비록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이 국외에 소재한 해외사업자라고 하더라고 한국인 또는 한국 정보주체에게 직접적·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역외적용 규정이 없더라도 한국 정부 및 법원을 통해 확립된 '효과주의에 근거한 국내법의 역외적용 규정'을 적용하여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해외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직접 적용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마련한 「해외사업자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에 근거한 실무적 해석론에 의하더라도 국외에 소재한 해외사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직접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역외적용 규정이 없더라도 국외에 소재한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위반행위로부터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은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규정들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인 AliExpress와 Temu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약관 등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역외(外)에 회사 설립등기를 하였고, 개인정보처리자 역시 중국 역외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법리상·외형상'으로만 보면 이들 플랫폼들은 중국 법률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여러 가지 사정의 변화로 거래와 상관 없는 중국 국내외의 제3자에게로 이전·유출될 가능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은 한국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신들이 마련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시로 변경하고 있다. 그동안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연혁을 보면,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의 처리를 명확화·구체화하는 등 한국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는 한국 정부의 행정력과 관련 여론 등이 일정 부분 의미 있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 방침들의 주요 내용들은 큰 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규정들을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뿐만 아니라 '국내대

리인의 지정'을 마련한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포함하여 한국 국내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에서 법적 정합성을 고려해보면 '한국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주의적 규정의 마련, 개인정보 처리의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한 개선, 개인정보의 최소수집 원칙 준수를 위한 대책 마련,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위한 방법의 다양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2. 법제 개선 방안 수립을 위한 제언

해외 온라인 플랫폼, 특히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관련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플랫폼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직접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플랫폼을 운영하는 해외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한국의 관련 법률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기를 기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과 행정체계의 수립이 중요하다. 필자가 아래에서 제안하는 법제 개선 방안은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의 관계에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상황을 토대로 제안하는 기초적인 제안이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역외적용 규정 명문화를 통한 실효성 확보

해외사업자 또는 해외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행위가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이들에게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는 해석론은 타당하며, 이는 한국 정부 및 법원의 태도와도 일치한다.

오늘날 시공간을 초월한 인터넷 세계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물리적 경계(국경)를 기준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범자를 정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동일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 간의 형평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국외에 소재한 해외사업자가 행하는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하여도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국내법의 역외적용’ 규정을 명문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부당한 처리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국내법의 역외적용 규정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것과 규정 자체가 없는 ‘입법의 불비’는 큰 차이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 해외사업자의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처리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체계의 구축

AliExpress의 경우에 2020년 01월 13일에 한국에서의 영업활동을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한 후에 현재(2024.11.04 기준)까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9차례 변경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2024년 3월 13일에 한국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한 것과 2024년 7월 24일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19억7,8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AliExpress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를 통해 변경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을 보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적용범위의 명확화, 개인정보 국외 제3자 제공의 구체화, 개인정보 국외 수집 및 이전 규정의 신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한국 정부 관계 당국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이 이용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이에,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하여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 합동으로 해외직구와 관련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소통 및 모니터링 등을 할 수 있는 상시적인 관리감독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권오승·홍명수, 「경제법(제14판)」, 법문사, 2021.

박노형, 「개인정보보호법」, 박영사, 2020.

서희석, 「소비자계약의 법리」, 부산대학교 출판부, 2019.

석광현·정순섭, “국제자본시장법의 서론적 고찰 – 역외적용 및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를 중심으로 –”, 「증권법연구」, 제11권 제2호(2010).

양창수·김재형, 「계약법(제3판)」, 박영사, 2020.

양형우, 「민법의 세계(제13판)」, 정독, 2022.

윤종수, “인터넷에서의 국가관할과 국내법의 역외적용”, 「공법연구」, 제39집 제1호(2010).

이상우, “중국 데이터법의 역외 적용”, 「숭실대학교 법학논총」, 제54집(2022), 182-183면.

이해원,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연구”, 「정보법학」, 제26권 제1호(2022).

최경진 외, 「개인정보보호법」, 박영사, 2024.

최승필,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대한 법적검토-역외적용 이론의 발전 및 적용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33권 제1호(2009).

공정거래위원회,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비상경제장관회의 24-5-5(공개)) 보도자료(2024.03.13.),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 (2024.03.13.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2024.3.26.),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 (2024.3.27.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참고자료(2024.8.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외사업자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20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알리익스프레스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19억 7,800만원 과징금 부과” 보도자료(2024.7.25.),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0386〉, (2024.8.10. 방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보도자료]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플랫폼 업체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2024.03.22.), 〈http://cucs.or.kr/?p=15741〉, (2024.6.5. 방문).

월요신문(Monday News), “강민국, 알리익스프레스 이용하면 개인정보 중국에 유출위험 있어”(2023.10.20.), 〈https://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715〉, (2024.6.5. 방문).

통계청, “2023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2023년 4/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통계 포함)” 보도자료(2024.2.1.).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 TRANSACTION CONSUMER PORTER) ‘해외직구 유형 및 과정’ 〈https://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103〉(2024. 6.10. 최종방문).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16.9% 증가” 보도자료(2024.3.29.).

Abstract

A Study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tatus for Korean users of China's Overseas Direct Purchase Online Platforms

- Focusing on the 'Personal Policy' of Aliexpress and Temu -

Jong-cheon Lim
Head Researcher(Ph.D.in Law), Korea Consumer Agency

The increase in overseas direct purchases through overseas online platforms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purchase a variety of products at low prices, but it can also bring about the disadvantage of users' personal information being collected and transferred by overseas businesses, etc., which can cause unexpected damage to the information subject. In particular, the increase in transactions using Chinese overseas direct purchase online platforms is accelerating these concerns.

Chinese overseas direct purchase online platforms have established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ie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of Korean users. Their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ies can be evaluated positively as they seem to reflect some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Kore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Representative examples include 'designation of 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ficer' and 'designation of a domestic agent.'

However, in relation to the Kore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ies of Chinese overseas direct purchase online platforms need to specify careful provisions for protecting consumer rights, and improvements are also needed in the method of obtaining consent for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Furthermore,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Korean users in relation to the use of Chinese overseas direct purchase online platforms, it is necessary to clearly state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provis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o establish a system for continuous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overseas business operators' handling of domestic consumers' personal information.

Key words: Chinese overseas direct purchase online platforms,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Kore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Management and supervision